

문화재청 향응·편의제공 수수 근절수칙

문화재청 공무원은 깨끗한 문화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청 공무원은 본인에게 제공 되는 향응, 선물, 편의제공 등이 있을 경우 제공자, 제공 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닌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이 향응·편의제공 등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3.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을 가격, 장소 등에 관계없이 받지 않는다.
4. 문화재청 공무원은 의도하지 않은 선물을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 받았을 경우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한다.
5.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식사 제공을 받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직무관련자와 출장 등에서 식사 등을 한 경우 식사 영수증을 증빙서류에 첨부한다.

6.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행과 단순 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7. 문화재청 공무원은 자체 행사, 워크숍 등 개최 시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지원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8.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숙박시설 예약을 요청하거나 숙박을 제공 받지 않는다.
9.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각종 관람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 면제, 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골프, 여행 등의 경비를 제공 받지 않는다.